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기대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12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4월 18일

발 의 자 : 김기대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선갑, 김동율, 김진철,
박양숙, 문형주, 박준희,
박호근, 양준욱, 오경환,
유동균, 조규영, 최관술,
한명희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상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는 횡단보도 쉼터를 도로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추가하여 횡단보도 쉼터의 설치 및 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종류에 ‘횡단보도 쉼터’를 추가함.(안 제2조제5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횡단보도 쉼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도로점용허가) 공작물·물건·그 밖에 시설물로서 「도로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삭제 2. 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,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(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). 3. 전통시장내 시설 등 4. 신·재생에너지 설비(서울시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한다)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2조(도로점용허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현행과 같음) <p>5. <u>횡단보도 쉼터</u></p>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비용발생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-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물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.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김 기 대